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305
----------	-----

제출연월일 : 2008. 2. 15.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작업범위 확대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6조).
- 나. 자동차부분정비업 시설기준에 회전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캐스터측정기를 추가하고 전조등의 정비를 원할시 전조등시험기를 갖추도록 규정함(별표 1).
- 다. 자동차부분정비업자는 가스자동차 정비시 안전조치를 한 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별표 1).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자치구청장과 합의
- 라. 기 타
 - (1) 신 · 구조문 대비표 : 별첨
 -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 · 폐지 등 없음
 - (3) 입법예고 : 2007. 7. 20. ~ 8. 9. / 접수의견 3건(별첨)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신고기준”을 “등록기준”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부분정비업 등록을 한 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3월 이내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1]

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제6조제1항 관련)

구 분	업 종 별	자동차종합 정 비 업	소형자동차 정 비 업	자동차부분 정 비 업	원동기전문 정 비 업
사업장 면적(m ²)	작업장·검차장·사무실· 부품창고 등의 총면적	1천 이상	400 이상	70 이상	300 이상
시 설 및 장 비	1.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2. 체인부록(1톤 이상) 3. 도장작업시설(스프 레이건 포함) 4. 부동액회수 재생기	○ ○ ○	○ ○ ○	○ ○	○ ○
점검·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	1. 제동시험기 2. 전조등시험기 3. 사이드슬립측정기 4. 속도계시험기 5. 일산화탄소측정기 6. 탄화수소측정기 7. 매연측정기	○ ○ ○ ○ ○ ○ ○	○ ○ ○ ○ ○ ○ ○	○ ○ ○ ○ ○ ○ ○	
시 험 기 및 측 정 기	1. 연료분사펌프시험기 2. 노즐시험기 3. 압력측정기 4. 회전반경측정기 5. 휠밸런서 6. 토인측정기 7. 캠버캐스터측정기 8. 전자식 엔진종합시험기	○ ○ ○ ○ ○ ○ ○ ○	○ ○ ○ ○ ○ ○ ○ ○		○ ○ ○ ○ ○ ○ ○ ○
공작기계	1. 실린더보링머신 2. 실린더호우닝머신 3. 밸브시트그라인더 4. 밸브시트카터 5. 크랭크연마기				○ ○ ○ ○ ○

- 주 : 1.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다만, 휠얼라인먼트 측정기를 갖춘 경우에는 회전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캐스터측정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도장작업시설은 폐인트 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수·폐수는 정화하거나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연료분사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자기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디젤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를,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및 매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부동액회수재생기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7. 자동차부분정비업자는 전조등 탈·부착 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전조등시험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8. 자동차부분정비업자는 가스자동차 정비시 가스용기와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부착이나 정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 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제6조제1항 관련)									
구 분		업 종 별		자동 차종 합정 비업	소형 차종 차정 비업	자동 차부 분정 비업	원동 기전 문정 비업	구 분		업 종 별		자동 차종 합정 비업	소형 차종 차정 비업	자동 차부 분정 비업	원동 기전 문정 비업
사업장 면적(m ²)	(생략)							사업장 면적(m ²)	(현행과 같음)						
시설 및 장비	(생략)							시설 및 장비	(현행과 같음)						
점검·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	1. 제동시험기 2. 전조등시험기 3. 사이드슬립측정기 4. 속도계시험기 5. 일산화탄소측정기 6. 탄화수소측정기 7. 매연측정기	○ ○ ○ ○ ○ ○ ○	○ ○ ○ ○ ○ ○ ○					점검·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	1. 제동시험기 2. 전조등시험기 3. 사이드슬립측정기 4. 속도계시험기 5. 일산화탄소측정기 6. 탄화수소측정기 7. 매연측정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험기 및 측정기	1. 연료분사펌프시험기 2. 노즐시험기 3. 압력측정기 4. 회전반경측정기 5. 휠밸런서 6. 토인측정기 7. 캡버캐스터측정기 8. 전자식 엔진종합시험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험기 및 측정기	1. 연료분사펌프시험기 2. 노즐시험기 3. 압력측정기 4. 회전반경측정기 5. 휠밸런서 6. 토인측정기 7. 캡버캐스터측정기 8. 전자식 엔진종합시험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작 기계	(생략)							공작 기계	(현행과 같음)						

주 : 1.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다만, 휠얼라인먼트 측정기를 갖춘 경우에는 회전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캡버캐스터 측정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 6. (생략)

〈신설〉

〈신설〉

주 : 1.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다만, 휠얼라인먼트 측정기를 갖춘 경우에는 회전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캡버캐스터 측정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 6. (현행과 같음)

7. 자동차부분정비업자는 전조등 탈·부착 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전조등시험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8. 자동차부분정비업자는 가스자동차 정비 시 가스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부착이나 정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

입 법 예 고 결 과

제 출 자	의 견	검토 결과
- 대전광역시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관련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훨얼라인먼트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것은 업체의 추가 자금 부담이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훨얼라인먼트 또는 3종 복합기 (회전반경측정기, 토안측정기, 캠버캐스터측정기) 중 한 기종의 측정 기를 갖추도록 하여 자금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훨얼라인먼트 : 3,900천원~25,000천원 • 3종 복합기 : 300천 원 ~600천 원 <p>○ 반영여부 :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향장치 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훨얼라인먼트를 갖추지 아니 할 수 있도록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정비 작업제한 범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른[별표 26]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의한 등록 기준으로 작업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나 3종 복합기로 대체구비 가능토록 함 <p>○ 반영여부 : 수정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훨얼라인먼트 측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존 장비 보유 업소에 위탁처리 할 수 있도록 조치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정비업자가 정비의 효율성을 위해 측정기를 구비한 정비업소에 위탁하여 정비하는 것은 정비 업자의 운영상의 문제로 판단됨 <p>○ 반영여부 : 미반영</p>

관계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등) ①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교통·환경오염·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07. 6. 7개정, '07. 12. 8시행)

제131조 (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①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종류별 정비작업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장치의 변경작업

2. 소형자동차정비업 : 승용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장치의 변경작업

3. 자동차부분정비업 : 별표 26에 따른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장치에 대한 점검·정비

4.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의 범위안에서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정비대상 자동차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정하여 정비업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제작 등을 하여 판매 하는 자동차

2. 자가 정비 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07. 4. 6개정, '07. 7. 7시행)

-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①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등록을 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을 폐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제23조(안전교육)** ① 사업자등·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수탁관리자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사업자등·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수탁관리자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은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28조 (안전교육)**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에서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교육대상자"라 한다)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③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6 ('07. 6. 7신설, '07. 12. 8시행)
[별표 26]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제131조제1항제3호 관련)

장치명	제한되는 작업 범위
1. 원동기 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진 교환, 엔진 분해정비, 실린더 블록의 분해정비 및 엔진 탈·부착(엔진 밑에 있는 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의 엔진 단순 탈·부착은 제외한다) ○ 디젤분사펌프(코먼레일형식은 제외한다)의 탈·부착, 정비
2. 연료 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PG 가스용기 및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부착, 정비
3. 조향 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향기어의 탈·부착, 정비
4. 제동 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BS 및 ASR모듈레이터 탈·부착, 정비 ○ 브레이크 캘버 탈·부착, 정비 ○ 분리식 배력장치 탈·부착, 정비
5. 완충 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6. 전기·전자 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조등 탈·부착, 정비(전구교환은 제외한다)
7. 기타 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체, 차체 구성품 및 프레임의 판금·용접·도장

비고 : 자동차부분정비업자가 전조등시험기를 갖춘 때에는 위 표 제6호의 작업을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 보고서

2008년 2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

I. 심사 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2월 15일 대전광역시장
2. 회부일자 : 2008년 2월 15일
3. 상정일자 : 제17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8. 2. 27)상정, 심사,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김의수)

1. 제안이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작업범위 확대에 따라 자동차정비업 시설기준을 조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6조).

- 나. 자동차부분정비업 시설기준에 회전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캐스터측정기를 추가하고 전조등의 정비를 원할시 전조등시험기를 갖추도록 규정함(별표 1).
- 다. 자동차부분정비업자는 가스자동차 정비시 안전조치를 한 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별표 1).

III.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이환구)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작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을 추가하여 자동차 정비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례안 세부내용을 보면,

- 안 제6조에서는 인용하고 있는 「건설기계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인 건설기계정비업 “신고기준”을 “등록기준”으로 정비함.
- 별표 1에서는 조례 제6조제1항과 관련된 자동차정비업 시설 기준 중 자동차부분정비업의 경우 회전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캐스터측정기를 추가하고, 전조등시험기는 전조등의 정비를 원할 경우만 갖추도록 하였으며, 자동차부분정비업자는 가스자동차 정비시 안전교육이수 및 소화기를 갖추는 등 안전조치를 한 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상과 같이 조례안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2007. 4. 6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고 2007. 7. 7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인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며,

조례 제6조제1항과 관련되는 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에 대하여는 2007. 6.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2007. 12. 8 시행되어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시설기준을 조정하였으며,

가스자동차를 정비하고자 하는 자동차부분정비업자는 사전 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시설 및 작업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부칙 제2항에서 규정한 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에 관한 경과 조치는 3월 이내 개정사항에 적합한 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내용의 미숙지로 관련 업체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언론홍보 또는 안내문 발송 등 사전 충분한 계도를 통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